

#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	11-9
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2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적용범위를 작은도서관까지 확대하고, 운영위원회 구성 대상, 수강료의 징수기준, 감면기준, 환급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촉진,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구립도서관 설치 및 명칭(안 제2조)

-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범위를 작은도서관과 향후 도서관 추가 설치·운영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.

### 나. 구립도서관 정의(안 제3조)

-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으로 명확히 구분 정의
- "사용료 등"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를 포함시킴.

### 다. 도서관 조직 및 인력(안 제5조)

- 도서관 운영인력에 자원봉사자를 추가하고 자원봉사 실비지급 근거 마련.

### 라. 도서관 운영위원회(안 제8조)

- 운영위원 대상을 문화계, 교육계, 관계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보완하고, 위원임기를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

### 마.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(안 제10조)

-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조항 정비

### 바. 사용료 등 징수 관리(안 제11조)

- 수강료 징수기준, 감면기준, 환급규정 보완

### 사. 기증자료 관리(안 제15조)

- 기증도서 처리 조항 추가

아. 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방안 보완(안 제18조)

-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범위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.

### 3. 개정근거

가. 「도서관법」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및 제27조(설치 등)

나.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17조(공공도서관의 설립·육성)

### 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#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# 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0. 12. 16 ~ 2011. 1. 5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1. 1. 27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도서관법」에 의거”를 “「도서관법」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(본문) 중 “두며, 명칭은 “마포구립 서강도서관”으로 한다.”를 “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.”로 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도서관은 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며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5호(종전 제3호) 중 “도서관 시설이용”을 “도서관 시설이용료,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”로 한다.

1. “공공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기준인 건물면적 264㎡ 이상의 도서관을 말한다.
2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말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강연회·감상회·전시회·독서회 기타 문화활동”을 “강연회, 감상회, 전시회, 독서회, 동아리활동 지원, 북스타트 운동 등의 문화활동”으로 하고, 제5호 중 “상호교환”을 “상호대차(相互貸借)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위탁할 경우에”를 “위탁할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제3항을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조직하고, 도서관의 시설·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·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은 “문화체육과장과 문화계·교육계 및 관계 전문인사”를 “문화계, 교육계, 관계 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”로, “위촉하는 자로 하고,”를 “위촉하고,”로, “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”는 “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”를 “위탁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예산의 범위안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“정지”를 “중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기타”를,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,”를 “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”로 하고,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제6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사용허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

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1.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2. 도서관 내에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11조제1항 중 “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”을 “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수강료,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, “금액 및 징수방법”을 “금액 및 징수 기준, 감면기준, 환급규정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하고”를 “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한다. 다만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도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도서관내의”를 “도서관 내의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소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마을문고 등 유관단체 및 바자회 등을 통해 기증도서를 처리할 수 있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3 이내로 한다.”를 “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”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, 불가항력적인 재해·사고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

“별표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 사용료 등(제11조제2항 관련)

### 1. 시설사용료

구 분	기 준	금 액
세미나실	1회 3시간 기준	30,000원

가. 기본 사용시간(3시간)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%를 가산적용  
나.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%를 받는다.

### 2. 수수료

구 분	규 격	금액(1면당)	비 고
회원증발급	1회 1매	1,000원	신규, 재발급
복 사 (전자복사기)	B5	30원	
	A4	40원	
	B4	50원	
	A3	60원	
인 쇄 (프린터기)	A4	40원	
	B4	50원	
	A3	60원	

### 3. 수강료 징수기준

구분	기준	수강료	비고
일반강좌	1주 5시간 이하	15,000원 이하	
	1주 10시간 이하	35,000원 이하	
특별강좌	프로그램 건당	35,000원 이하	특강 등

가. 수강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의 개별기준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.

나.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, 교재비, 행사비 등은 수강자가 부담 한다.

다. 그 밖에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.

### 4.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
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, 그 밖에 구청장

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
나. 이용자 감면기준

감 면 대 상	감면비율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	면제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본인	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
「한부모가정법」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	
만 5세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% 이내 차상위계층	1/2감면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	
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(마포구 자원봉사등록회원에 한함)	

5. 환급규정

가. 도서관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

1) 개시일 이전·이후 :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급

나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
1) 사용개시일 이전 :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급

2) 사용개시일 이후 : 취소 전까지의 강좌 수강 횟수 또는 시설 사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잔액 환급

※ “개시일”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,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서관법」에 의거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·보존·열람·대출과 도서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, 독서증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.....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.....</p>
<p>제2조(설치 및 명칭)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관할구역 안에 두며, 명칭은 “마포구립 서강도서관”으로 한다.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제2조(설치 및 명칭) ① .....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.</p> <p>② 도서관은 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며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.</p>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제3조(정의) .....</p> <p>1. “공공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기준인 건물면적 264㎡ 이상의 도서관을 말한다.</p> <p>2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 시</p>
<p>〈신 설〉</p>	



현 행	개 정 안
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사용료 등”이라 함은 도서관 시설이용 및 도서관내 비치된 자료·정보 등을 복사 또는 인쇄하거나, 그 밖에 회원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기능)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강연회·감상회·전시회·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</u></p> <p>5.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<u>상호교환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제5조(조직 및 인력) ① (생략)</p> <p>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하되,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.</p> <p>〈<u>신 설</u>〉</p>	<p><u>행령」 제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말한다.</u></p> <p>3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p> <p>4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5. .... <u>시설이용료,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수강료</u> ..... ..... .....</p> <p>제4조(기능) 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강연회, 감상회, 전시회, 독서회, 동아리활동 지원, 북스타트 운동 등의 문화활동</u> .....</p> <p>5. .... ..... <u>상호대차(相互貸借)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조직 및 인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위 탁할 경우에는 .....</p> <p>.....</p> <p>③ <u>자원봉사자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조직하고, 도서관의 시설·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·봉사 등의 임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운영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<u>문화체육과장과 문화계·교육계 및 관계 전문인사 중에서</u>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</p> <p>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7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6. (생략)</p> <p>제8조(운영 및 관리)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</p>	<p>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 1명..... 10명 .....</p> <p>③ ..... <u>문화계, 교육계, 관계 전문인사 및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</u> ..... 위촉하고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④ .....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.....</p> <p>제7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..... .. ..... <u>각 호의</u> ....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운영 및 관리) ① ....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, 수량, 이용요금,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시설사용 등) (생략)</p> <p>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(생략)</p> <p>1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2.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,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&lt;신 설&gt;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5. 기타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. &lt;신설&gt;</p>	<p>....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예산의 범위에서 .....</p> <p>.....</p> <p>제9조(시설사용 등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...., 그 밖에 .....</p> <p>.....</p> <p>2.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.....</p> <p>3. 사용허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</p> <p>4. ~ 5. (현행 3~4호와 같음)</p> <p>6. 그 밖에 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.</p> <p>1.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</p>

현행	개정안
<p>〈신설〉</p> <p>제11조(사용료 등 징수) ① <u>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</u> 제반 사용료 등은 무료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사용료 등의 징수는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19조에 <u>의하여</u>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<u>금액 및 징수 방법</u> 등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.</p> <p>제12조(변상책임)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·분실하였을 때에는 <u>동일자료로 변상하게 하고</u>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(시가)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</u>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13조(입장의 제한) 관장은 <u>도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</u>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p>	<p><u>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도서관 내에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</u></p> <p>제11조(사용료 등 징수) ① <u>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수강료,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..... 따라 .....</p> <p>..... <u>금액 및 징수기준, 감면기준, 환급규정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제12조(변상책임) ① ..... <u>동일자료로 변상한다. 다만,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1항 및 제2항에도</u> .....</p> <p>.....</p> <p>제13조(입장의 제한) ..... <u>도서관내의</u> .....</p> <p>....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4조(대출) ①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<u>당해</u>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</li> <li>3. <u>기타</u> 관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/ol> <p>②관외대출자료 중 회귀자료·귀중자료·고서 등의 자료와 <u>기타</u> 관장이 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대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.... ... <u>소속</u> .....</li> <li>3. <u>그 밖에</u> .....</li> </ol> <p>② .....</p> <p>..... <u>그 밖에</u> .....</p> <p>.....</p>
<p>제15조(기증자료) (생략)</p> <p>〈<u>신설</u>〉</p>	<p>제15조(기증자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마을문고 등 유관단체 및 바자회 등을 통해 기증도서를 처리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8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 ① (생략)</p> <p>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<u>연간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 3 이 내로 한다.</u> (단서 신설)</p>	<p>제18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</p> <p><u>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불가항력적인 재해·사고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

## 현 행

## 개 정 안

[별표]

### 1. 시설사용료

구 분	기 준	금 액
세미나실	1회 3시간 기준	30,000원

- 기본 사용시간(3시간)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%를 가산적용
-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%를 받는다.

### 2. 자료복사 및 인쇄

구 분	규 격	금액(1면당)	비 고
복사 (전자 복사기)	B5	20원	
	A4	30원	
	B4	40원	
인쇄 (프린터기)	A3	50원	
	A4	30원	
	B4	40원	
	A3	50원	

### 3. 회원증 발급

구 분	금 액	기 준	비 고
회원증	1,000원	1회 1매	신규, 재발급

<신 설>

<신 설>

[별표]

### 1. 시설사용료

구 분	기 준	금 액
세미나실	1회 3시간 기준	30,000원

- 가. 기본 사용시간(3시간)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의 10%를 가산적용
- 나.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%를 받는다.

### 2. 수수료

구 분	규 격	금액(1면당)	비 고
회원증	1,000원	1회 1매	신규, 재발급
복사 (전자 복사기)	B5	30원	
	A4	40원	
	B4	50원	
인쇄 (프린터기)	A3	60원	
	A4	40원	
	B4	50원	
	A3	60원	

### 3. 수강료의 징수범위

구 분	기 준	수강료	비고
일반강좌	1주 5시간 이하	15,000원 이하	
	1주 10시간 이하	35,000원 이하	
특별강좌	프로그램 건당	35,000원 이하	특강 등

- 가. 수강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의 개별 기준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
- 나.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, 교재비, 행사비 등은 수강자가 부담한다.
- 다. 그 밖에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.

### 4.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
<p>&lt;신 설&gt;</p>	<p>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,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</p> <p>나. 이용자 감면기준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10 533 1417 1214"> <thead> <tr> <th>감 면 대 상</th> <th>감면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</td> <td rowspan="6">면제</td> </tr> <tr> <td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본인</td> </tr> <tr> <td>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</td> </tr> <tr> <td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</td> </tr> <tr> <td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</td> </tr> <tr> <td>만 5세 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</td> </tr> <tr> <td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% 이내 차상위계층</td> <td rowspan="3">1/2감면</td> </tr> <tr> <td>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</td> </tr> <tr> <td>연간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(마포구 자원봉사자등록회원)에 한함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5. 환급규정</p> <p>가. 도서관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</p> <p>1) 개시일 이전·이후 :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급</p> <p>나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</p> <p>1) 사용개시일 이전 :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급</p> <p>2) 사용개시일 이후 : 취소 전까지의 강좌 수강 횟수 또는 시설 사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잔액 환급</p> <p>※ “개시일”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,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</p>	감 면 대 상	감면비율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	면제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본인	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	만 5세 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% 이내 차상위계층	1/2감면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	연간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(마포구 자원봉사자등록회원)에 한함)
	감 면 대 상	감면비율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	면제												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1~3급 등록장애인 본인														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											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												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														
만 5세 이하의 셋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													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% 이내 차상위계층	1/2감면													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														
연간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(마포구 자원봉사자등록회원)에 한함)														